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3.28.)

#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거 창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4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18
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24
6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	29
7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9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7
10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52
1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1. 최정환 의원 등 11명
- 나. 회부일자 : 2022. 3. 14.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환 의원】

거창사건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는 희생자가 2인 이상인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 유족의 상처 치유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거창사건 희생자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생활보조비를 정함  
(안 제3조)
- 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을 정함(안 제4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사건 희생자보다 유족 인원이 많은 경우

일부 유족이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유족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 희생자에 대한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근거와 유족이 다수인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유족간 형평성 및 유사사건의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해결로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생활보조비 100,000원을”을 “생활보조비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②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u>생활보조비 100,000원을</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유족으로서,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우자</li> <li>2. 자녀</li> <li>3. 부모 또는 조부모</li> <li>4. 형제자매</li> </ol> <p>② <u>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u></p>	<p>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u>생활보조비를</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유족으로 한다</u></p> <p>② <u>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u></p>

[별표]

##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희생자 수	등록 유족 수	지급금액	산출 내용
희생자 1명	1명	1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1명
	2명	2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2명
	3명	3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2명	1명	2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1명
	2명	4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2명
	3명	6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3명	1명	3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1명
	2명	6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2명
	3명	9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4명	1명	4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1명
	2명	8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2명
	3명	1,2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5명	1명	5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1명
	2명	1,0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2명
	3명	1,5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3명

[비고]

- 가. 희생자 수와 유족 수는 예시임
- 나. 유족 1명당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
- 다. 희생자 1명당 매월 지급금액은 100,000원임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1)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수 30개 이상 밀집 구역
  -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 나.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정함(안 제3조)
  - 1)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
  -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등
-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정함(안 제4조)
- 라. 골목형상점가 취소를 정함(안 제5조)
- 마.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권장,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0.2.11.)으로 기존 점포 밀집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이 없었던 상가 밀집구역에 대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내 골목형상점가 조건에 맞는 대상구역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도 포함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지번(주소)	면적(m <sup>2</sup> )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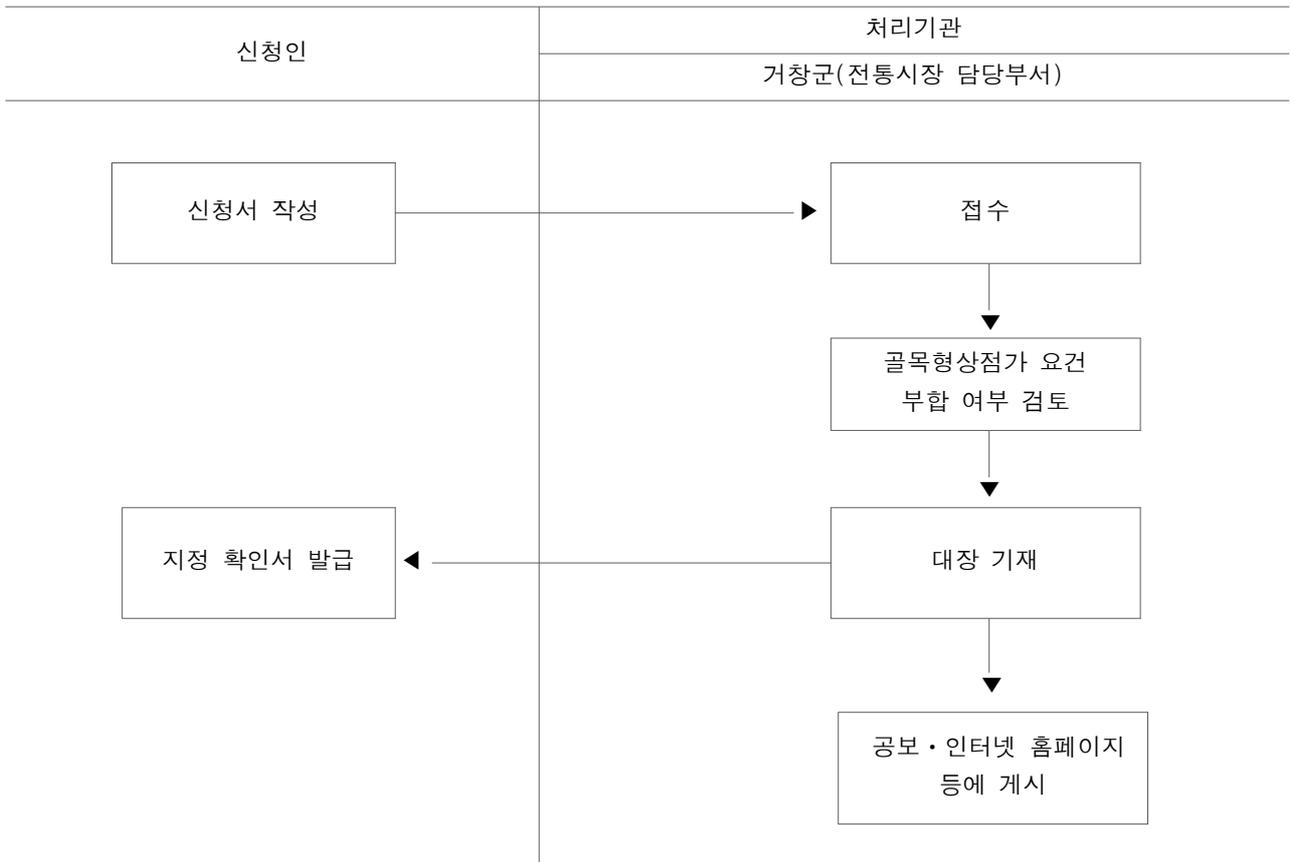
**거창군수**    귀하

붙임 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확인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직인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시외버스 이용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유료화에 따른 이용률 저조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의된 용어로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항)
  - 1) 노상주차장 및 직영노외주차장 ⇒ 공영주차장
  - 2) “공영주차장”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현행 제2조제1호)
-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제9조제3항)
  - 1) 공익목적의 사유: 교통의 원활한 소통,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
  - 2) 감면율 : 면제 또는 100분의 50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에 조성된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이용률 저조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률 증가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9조제3항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이 주요내용으로 공익목적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 또는 감경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가와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에서 규정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제3조에서 규정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2분의 1”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1. 교통의 원활한 소통
2.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3.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

제16조제1항 중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목 및 앞면 중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                      1.~3. (생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생략)                      ② <u>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u>                      1.~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u>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u>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u>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u>제9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                      1.~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현행과 같음)                      ② <u>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u>                      1.~8.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u>                      1. <u>교통의 원활한 소통</u>                      2. <u>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u>                      3. <u>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u></p> <p><u>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u>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u>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u>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신종호】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그들을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4조)
  -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 2)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
- 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정함(안 제5조)
- 마. 자발적 협약 체결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바.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사.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8에서 위임되었으며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관련 사항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한 것으로
- 안 제3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발굴 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한 및 제한시 대체 비용지원 가능, 안 제6조 ~ 제7조는 자발적 협약 체결 및 행·재정 지원, 이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 제9조는 우수업소 선정 및 우수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나. 군의회
  - 다. 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책 발굴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
  - 나.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한 번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②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신종호】

경상남도에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제6조)
- 다.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7조)
- 라.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정함(안 제8조)
- 마.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를 정함(안 제9조)
- 바.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10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경상남도의 조례 제정 요청(2022.1.18.)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 ~ 제6조까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안 제8조는 자원순환 활성화사업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의 2021년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4.9톤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이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배달음식시장 성장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원순환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할 것
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

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집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
2. 자원순환 육성·지원
3. 자원순환 인식 확장
4.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무료 지원
5.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방법을 정함(안 제2조)
- 나.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및 감사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다.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 편성·운영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감사실시 통보,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를 정함(안 제6조~제8조)
- 마. 감사반의 유의사항,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9조·제10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안 제3조 ~ 제7조는 감사 실시여부 결정,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실시 통보,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감사 종료 후 결과 처리 및 관리주체 등의 감사 조치사항 이행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거리 산출기준을 법령위임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41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 개정(2021.11.2.)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거리 산정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41조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용주거지역  
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관련해 조례로  
위임한 거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제2항~제4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거리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p> <p>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이상</p> <p>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영 제86조제3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p>	<p><b>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p> <p>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p> <p>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p> <p>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p>

<p><u>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u>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u>”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p>
--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정함(안 제4조~제9조)
- 라. 가공시설 이용, 이용료, 이용료 반환, 이용제한을 정함(안 제10조 ~ 제13조)
- 마.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신설(안 제14조)
- 바. 법령 및 조례 재기개 등 삭제(현행 제3조·제8조·제9조·제16조 ~ 제18조)
  - 1) 정의, 실비변상, 관리운영, 위탁기간, 준용, 시행규칙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 안 제14조는 가공센터 사용허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사용·수익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따라 사용허가 방법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가공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에 농산물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을 갖춰 둔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3. 가공센터의 가공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
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
5. 가공시설의 이용료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 관련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이 경우 농업인등의 비용부담을 최소로 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1. 가공시설 구입가격
2.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3. 제품의 판매가격
4. 가공물량 및 공공요금 등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등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3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가공시설의 이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가공품이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등이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거창사과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에 거창사과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거창사과 융복합센터를 설치하여 거창사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제4조)
- 나. 융복합센터 체험료 등을 정함(안 제5조)
- 다.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제12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제정조례안은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으로 거창사과 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융복합센터를 지역 경제의 다각화·고도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3조는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기능을, 안 제6조~제12조는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해촉, 회의 개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창사과 및 가공식품의 유통·판매·홍보, 체험 및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융복합센터는 거창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따른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사과(이하 “거창사과”라 한다)와 거창사과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 또는 가공품(이하 “가공상품”이라 한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융복합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에 둔다.

③ 융복합센터는 즉석판매조리장, 가공장, 판매장, 체험 및 교육장, 휴식 공간,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제3조(기능)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유통·전시·판매·홍보
2.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유통·전시·판매·홍보
4. 그 밖에 융복합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위탁)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체험료 등)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행복농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거창사과 생산·유통·가공·출하 관련기관·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촌융복합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수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안 별표 1)
  - 2)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안 별표 2)
- 다. 긴급한 재해복구 등 필요시 면제를 정함(안 제4조)

- 라. 부과·징수를 정함(안 제5조)
- 마. 다수의 원인자를 정함(안 제6조)
- 바. 과오납금 반환 등을 정함(안 제7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제정조례안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산출 세부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과·징수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6조 및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안 제2조 원인제공자 부담금과 안 제3조 파손자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각각 납부주체별로 구분하고, 산출기준도 각각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외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임
- 공정한 요금부담으로 신뢰를 향상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제공자의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
2.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3.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음

제3조(파손자의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 제2조 준용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도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도물의 양에 대한 비용: 「거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출기준에 따르며, 누수량 및 퇴수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름
3. 급수차의 사용경비: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름
4. 도로결빙 방지비용: 차량경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함

5.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 차량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에 따름
6. 홍보비: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든 모든 비용을 함함

**제4조(면제)** 군수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부과·징수)** ① 군수는 원인제공자와 파손자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을 먼저 부과·징수한 후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도공사등은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다수의 원인자)** ① 군수는 파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을 분할하여 산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 반환 등)**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등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

###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2조제3호 관련)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 = 순자산/시설용량
  - 1) 순자산: 거창군에서 건설한 수도시설(원수,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말한다)로서 거창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른 금액
  - 2) 시설용량: 군 자체 정수용량과 광역상수도 광역배분계획량의 합
2. “수돗물사용량”이란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에 실제 들어간 공사비용을 말하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고 비용도 그에 따른다.
4. 단위사업비는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5.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순자산과 시설용량을 재적용한다.

[별표 2]

누수량 및 퇴수량 산출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sqrt{2gh}$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CA\sqrt{2gh} \times 3600$$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256ap^{1/2}$$

$Q1$ = 초당 손실수량( $m^3/sec$ )	$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 )
$C$ = 유량계수( $C_a \times C_v$ )	
$C_a$ = 수축계수(0.666적용)	$C_v$ = 유속계수(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 $m^2$ ) = 10,000a( $cm^2$ )	$g$ = 중력가속도( $9.8m/sec^2$ )
$h$ = 수두(m) = 10p	$p$ = 수압( $kg/cm^2$ )
(수두 10m는 수압 $1kg/cm^2$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체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출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times L$

$Q$ = 손실수량( $m^3$ )	$A$ = 면적( $m^2$ )	$L$ = 연장 (m)
---------------------	-------------------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0.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공고 및 산정 방법 개선, 부과·징수 시기 명확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 신설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 개선(안 제20조제1항제4호)
  - 1) 현행 :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 2) 변경 : 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
-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4항)

1) 현행 : 건축 인·허가 시 부과

2) 변경 : 건축 인·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 산정 부과

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 신설(안 제20조제3  
항 및 제26조제3항)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5)

1) 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

2) 산술평균 ⇒ 기하평균(물가상승에 적합)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환경부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환경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0조제1항제4호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맞게 개선하고, 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4항은 건축물 인·허가 시 부과하던 것을 인·허가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부과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별표5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개선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안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를 신설하여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임
- 환경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조례시행규칙이”를 “규칙”으로 한다.

제20조 조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 61조제3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인·허가 때 부과한다.”를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한다”를 “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

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설건축물(제20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1년 이하: 50퍼센트
2. 1년 초과 3년 이하: 30퍼센트

제31조 조 제목 “(행정위탁)”을 “(행정협약)”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22조·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신고·허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u>」(이하 “<u>조례시행규칙</u>”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u>조례시행규칙</u>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조례시행규칙</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u>법 제61조제3항</u>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3. (생략)</p> <p>4. 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u>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u> 등에 <u>공고</u></p> <p>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p>	<p>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규칙</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u>규칙</u>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규칙</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u>법 제61조제1항</u>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u>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u></p> <p>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p>

가(원/세제공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때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생략)

### <신 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  
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까지 납부하도  
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가(원/세제공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허  
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  
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  
으로 함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  
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  
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  
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  
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  
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전  
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행정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의를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가설건축물(제20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1년 이하: 50퍼센트
2. 1년 초과 3년 이하: 30퍼센트

제31조(행정협의를)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의를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1. \text{ 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현행)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개정안)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환경부 권고

▷ (신설)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2.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3. 거창군에 2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거창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